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20. 7.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비치 보호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자 보호강화를 위해 연구활동 및 취급물질(화학물질, 가스, 생물, 물리적 유해인자 등)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할 보호구 종류 규정(안 제3조 및 별표1)
- 나. 기관 자체 안전관리 의사결정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실시) 주기 규정(안 제4조)
 - ※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8조 및 별표2)
- 라. 임시건강검진 세부 실시기준 마련(안 제11조)
 - 1) 유소견자와 같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자 등 건강 추적관리가 필요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대상 규정
 - 2)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방법 및 면제사유 기준 마련
- 마.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14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제7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교육·훈련)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발

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외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검진을 명할 수 있다.

1. 유소견자(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하여 질병 또는 장애 증상 등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사람, 이하 같다)와 같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외부로 누출되어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명하는

임시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 기관의 의사로부터 임시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실사

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포함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입원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②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⑥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요양급여: 최고한도(1억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4. 유족급여: 2억원
5. 장의비: 1천만원

⑧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자가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⑨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8항까

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2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2.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역

제17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5와 같다.

제18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 별지 제10호서식
2.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11호서식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4조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3의 저위험연구실은 제외)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연구활동(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연구활동에 따라 보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 및 착용하도록 한다.

가. 화학 및 가스

연구활동	보호구
다량의 유기용제 및 부식성 액체 및 맹독성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내화학성 장갑 ²⁾ , 내화학성 앞치마 ²⁾ , 호흡보호구 ³⁾
인화성 유기화합물 및 화재·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보안면, 내화학성 장갑 ²⁾ , 방진마스크, 방염복
독성가스 및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내화학성 장갑 ²⁾ , 호흡보호구 ³⁾

나. 생물

연구활동	보호구
혈액, 세포, 조직 등 잠재적 감염성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일회용 장갑 ²⁾ , 방진마스크
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으며 물릴 우려가 있는 동물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일회용 장갑 ²⁾ , 방진마스크, 잘림방지 장갑, 방진모, 신발덮개
제1위험군 ⁴⁾ 에 해당하는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성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일회용 장갑 ²⁾
제2위험군 ⁴⁾ 에 해당하는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성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일회용 장갑 ²⁾ , 호흡보호구 ³⁾

다. 물리(기계, 방사선, 레이저 등)

연구활동	보호구
고온의 액체, 장비, 화기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내열장갑
액체질소 등 초저온 액체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방한 장갑
낙하 또는 전도 가능성 있는 중량물 취급	보호장갑 ²⁾ , 안전모, 안전화
압력 또는 진공 장치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보호장갑 ²⁾ , 안전모, (필요에 따라 보안면 착용)
큰 소음(85dB이상)이 발생하는 기계 또는 초음파기기 취급 및 환경	귀마개 또는 귀덮개
날카로운 물건 또는 장비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필요에 따라 잘림방지 장갑 착용)
방사성 물질 취급	방사선보호복, 보안경 또는 고글 ¹⁾ , 보호장갑 ²⁾
레이저 및 UV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¹⁾ , 보호장갑 ²⁾ , (필요에 따라 방염복 착용)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취급	절연보호복, 보호장갑 ²⁾ , 절연화
분진·미스트·흙 등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나노 물질 취급	고글, 보호장갑 ²⁾ , 방진마스크
진동이 발생하는 장비 취급	방진장갑

3. 기타 취급 유해인자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구는 추가 비치 및 착용하도록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호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및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 1)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보안경 또는 고글 선택
- 2)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재질 선택
- 3)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정화능력 및 보호기능을 가진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방독겸용마스크 등 선택
- 4)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5조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제8조 관련)

구분	실시주기	실시시간	교육내용
신규교육	등록후 6개월 이내	18시간 이상	· 연구실안전법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관한 사항 ·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기술인력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제9조제1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신규 교육 · 훈련	근로자	가. 영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자가 아닌 자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 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기 교육 · 훈련	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 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

비고

-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한함)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호의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 (제9조제2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시간	교육시기 및 주기	교육 내용
1. 신규교육	18 시간 이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12 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연구실사고 사례, 예방 및 대처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마크

1. 도안모형



심벌마크 최소사용



10mm

※ 비고: 해당 마크의 의미

- 이 마크는 인증을 받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우수성을 상징합니다.
- 이 마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이 협력하여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반영합니다.
- 마크 중앙의 'SL'이란 'Safety Laboratory'의 약자로서, 안전한 연구환경을 상징하는 청색과 녹색의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합니다.
- 'Safety Laboratory' 오선(五線)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한 연구실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2. 도안요령

- 가. 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사용하여 합니다.
- 나. 마크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방식과 슬라이드에 의한 투사복제방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인증마크 1도 사용(예)



- 신문 광고 등에 흑백 1도로 인증마크를 사용할 때에는 위의 마크를 사용하며, 재현 시 위에서 보여주는 색상과 동일하게 재현시키도록 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록구분	안전점검 대행기관 []	기술인력 보유현황(명)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		장비보유 현황(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장비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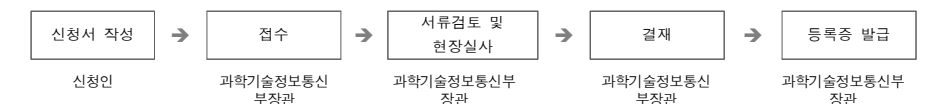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상호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록 구분	안전점검 대행기관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	등록번호

변경 사항	기술인력	변경 전	
		변경 후	
	장비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의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증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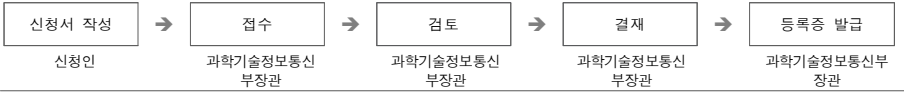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구실사고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관명		기관 유형	☐ 대 학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 ☐ 그 밖의 기관
-----	--	-------	---

주소	
----	--

사고발생 원인 및 발생경위 ¹⁾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사고 장소	학과(부서)명: 연구실명: (연구분야 :)
	연구활동내용	연구활동 수행인원, 취급 물질·기계·설비, 수행 중이었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 기록
	사고발생 당시 상황	불안정한 연구실 환경,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정한 행동 등 기록

피해 현황	인적 피해	성명	성별	출생 연도	신분 ²⁾	상해 부위	상해 유형 ³⁾	상해· 질 병 코드 ⁴⁾	치료 (예상) 기간	상해· 질병 완치 여부	후 유 장애 여부 (1~14 급)	보상 여부	보상 금액	
		①												
		②												
		③												
		④												
		⑤												
		※ 인적피해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피해현황'부분만 별지로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적 피해	피해물품							피해금액		약 백만원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시점까지 내부보고 등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치료 및 복구 등) 기록
-------------	--

재발방지대책	(상세계획은 별첨)
--------	------------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진단	☐ 실시(실시일:) ☐ 미실시(사유:)
	보험가입	☐ 가입(가입일:) ☐ 미가입(사유:)
	안전교육	☐ 실시(실시일:) ☐ 미실시(사유:)

별첨	재발방지대책 상세계획 사고장소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	----------------------------------

관계자 확인 (년 월 일)	연구주체의 장 (인)	(서명 또는 인)
	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 (인)	(서명 또는 인)
	연구실책임자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1) 사고발생원인 및 발생경위

※ 연구실사고 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고일시[년, 월, 일, 시(24시 기준)], 사고발생 장소, 사고 발생 당시 수행 중이었던 연구활동 내용(연구활동 수행인원, 취급 물질·기계·설비, 수행 중이었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 사고발생 당시 상황[불안정한 연구실 환경(기기 노후, 안전장치·설비 미설치 등),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정한 행동(예시: 보호구 미착용, 넘어짐 등)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2) 신분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기관유형이 “대학”인 경우에는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대학원생(석·박사), ④ 대학생(학사, 전문학사)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기재하고, 그 밖의 신분을 기입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기재할 것
- ※ 기관유형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① 연구자(근로자 신분을 지닌 자), ② 학생연구원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기재하고, 그 밖의 신분을 기입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기재할 것
- ※ 기관유형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① 전담연구원, ② 연구보조원, ③ 학생연구원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기재하고, 그 밖의 신분을 기입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기재할 것

3) 상해유형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①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태
- ② 탈구 : 뼈마디가 빠져 어긋난 상태
- ③ 찰과상 : 스킨거나 문질려서 살갗이 벗겨진 상처
- ④ 찢림 : 칼, 주사기 등에 찢린 상처
- ⑤ 작상 : 받치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피부 표면에는 손상이 없으나 피하조직이나 내장이 손상된 상태
- ⑥ 베임 :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
- ⑦ 이물 : 체외에서 체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체내에 발생하여 조직과 익숙해지지 않은 물질이 체내에 있는 상태
- ⑧ 난창 : 청각기관의 장애로 청력이 약해지거나 들을 수 없는 상태
- ⑨ 화상 : 불이나 뜨거운 열에 데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 ⑩ 동상 : 심한 추위로 피부가 얼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 ⑪ 전기상 : 감전이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상함 또는 그 상처
- ⑫ 부식 : 알칼리류, 산류, 금속 염류 따위의 부식독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일어난 상태
- ⑬ 중독 : 음식이나 내용·외용 약물 및 유해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상태
- ⑭ 질식 : 생체 또는 그 조직에서 갖가지 이유로 산소의 결핍,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 ⑮ 감염 :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상태
- ⑯ 물림 : 짐승, 독사 등에 물려 상처를 입음 또는 그 상처
- ⑰ 굶핍 : 동물에 굶혀서 생긴 상처
- ⑱ 염좌 : 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져 생긴 손상
- ⑲ 절단 : 예리한 도구 등으로 인하여 잘린 상처
- ⑳ 그 밖의 유형 : ① ~ ⑲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해의 명칭을 기재할 것

4) 상해·질병 코드는 진단서 상에 표기된 상해·질병 코드(질병분류기호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보고서

보고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험가입내역	보험회사명	가입 연월일	
	보험명	보험기간	
	가입금액	가입대상자 수	
	사망 보상한도	후유장애 보상한도	상해 보상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연구주체의 장)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보험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인증

[]재인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기관현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기관유형	[]종합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인	부서명		성명/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연구실 현황	연구실명			
	연구실책임자명/직책		연구활동종사자 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서 사본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1부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1부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1부 5.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1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아래에서 설명하는 항목은 해당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관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 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 ④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
- ⑤ 담당자: 기관측 인증업무 담당자의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⑥ 연구실 현황: 인증신청 연구실의 연구실명 및 연구실책임자 성명, 직책, 연구활동종사자 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처 리 절 차



인증 제 - 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1. 기관명:
2. 연구실명:
3. 소재지:
4. 인증일자 및 유효기간:

위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대표자)		
	업무지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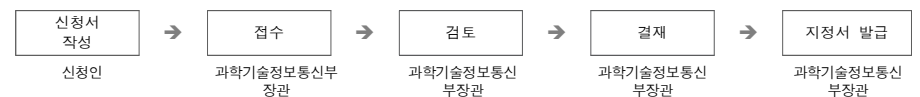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1부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운영규정 1부 3.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공고하는 경우 해당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앞 쪽)

제 호

검 사 원 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mm × 85mm [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검 사 원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앞 쪽)

제 호

사 고 조 사 반 원 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mm × 85mm [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사 고 조 사 반 원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